

대구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2가단1376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 채무자 B

원고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손병희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이희정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367,9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3. 8. B와 C가 판매대행하는 D 광고권에 4,550만 원을 투자하고 2018. 3. 12. 370만 원을 회수하였고, B와 C는 2019. 7. 30. 참가인과 2021. 3. 8.까지 원금회수가 불가하다면 나머지 금액을 보충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참가인은 2021. 7.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가단7459호로 B와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1. 19. ‘B와 C는 공동하여 참가인에게 4,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28.부터 2021.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2. 1. 확정되었다(이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B은 2020. 4. 10. 피고(E기관)에게 상주시 F 대 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578,579,27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참가인은 2022. 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B은 2022. 3. 10. 개인회생 신청(대구지방법원 2022개회4979호)을 하였고, 2022. 6. 1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인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그대로 준용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부인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B의 유일한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안동시 G, H, I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을 제1호증),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산하 E기관의 상주사무소는 상주시 J 대 641㎡(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E기관)는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 소외 토지에 붙어 있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B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② E기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E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1인과 B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1인이 평가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수금액으로 결정하고, E기관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통계청의 승인을 얻었다.

③ 피고는 2020. 11. 2. 소외 토지에 이 사건 토지를 합병하였고, 그 지상에 청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④ E기관이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